

● 제32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111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4. 8. 12.

다. 회 부 일 : 2024. 8.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직업체험 등 일자리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등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위기 십대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 위기 십대여성의 교육과 자립준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시설현황

- 시설명 :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8길 33, 3층
- 시설규모 : 253.6㎡
- 주요시설 : 교실2, 작업장2, 상담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

다.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5. 1. 12. ~ 2028. 1. 1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449백만원('24년 기준)
- 위탁사무
 - 학력취득을 위한 개인별 맞춤 학습 및 검정고시 수업 운영
 -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을 위한 진로교육 및 상담, 일자리프로그래밍 운영, 인턴활동 및 취업연계
 - 심리·정서 프로그램, 찾아가는 거리학교, 직업체험 축제 등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등을 겪고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진로교육, 일자리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자립준비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 제출 개요

- 동 동의안은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위탁기간이 만료(2025.1.11)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력취득을 위한 수준별 맞춤 학습 및 검정고시 수업 운영
 -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인턴활동 및 취업연계 등
 - 진로교육 및 상담, 심리·정서 프로그램, 찾아가는 거리학교, 직업체험축제 등

2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가.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현황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에 따라 위기십대 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4개소를 위탁·운영중임²⁾.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십대여성"이란 10세 이상 19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2.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한다.
3.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 지원시설 4개소 중 산부인과·치과·정신과 등 전문의 의료 지원 중심의 십대 여성건강센터³⁾를 제외하고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은 아래와 같음.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 여성 지원시설 현황>

구 분	십대 여성일시지원센터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위 치	동작구 상도로152-1	관악구 관천로113	강북구 도봉로 98길
운영법인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단체)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사)청소년내길찾기
시설규모	120㎡	550.2㎡	253.6㎡
최초위탁	2012.8	2009.8	2010.5
센터기능	상담, 아웃리치, 일시보호 긴급구조	상담,아웃리치,일시보호 교육, 인턴십	상담,아웃리치,일시보호 교육, 인턴십
주요사업	일시보호 등 일시생활지원, 상담 및 귀가지원, 지원시설연계	학력취득(검정고시), 인턴십활동, 취업연계	학력취득(검정고시), 인턴십활동, 취업연계
운영인력	총6명	총7명	총5명
예산액(24년)	379백만원	647백만원	449백만원
비고	-	여성가족부 대안교육 위탁기관	-

- 이 중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이하 “센터”)는 최초 위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 재계약, 재위탁을 거쳐 (사)청소년내길찾기 에서 계속 수탁 중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음.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3) [십대여성건강센터]

- 위탁내용: 시립 청소년건강센터 운영 및 건물관리
- 주요업무: 산부인과·치과·정신과 등 전문의 진료, 기초검진, 자궁경부암 등 예방접종, 종합심리검사 등 심리치료 지원, 건강생활촉진 지원 등
- 위탁기관명: (사)막달레나공동체

<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시 설 명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위탁법인	(사)청소년내길찾기
위탁기간	2022.1.12.~2025.1.11.(3년)
운영인력	총5명
소요예산('24년)	448,6백만원
협약서 상 사업범위	- 학력취득을 위한 수준별 맞춤 학습 및 검정고시 수업운영 -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취업연계 - 진로교육 및 상담, 심리정서프로그램, 사례관리, 찾아가는 - 거리학교 등 -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경과	- 1차 : 2010.5.28.~2010.12.31.(7개월, (사)청소년내길찾기) - 2차 : 2011.3.21.~2012.1.10.(10개월, (사)청소년내길찾기) - 3차 : 2012.1.12.~2013.1.11.(1년, (사)청소년내길찾기) - 4차 : 2013.1.12.~2016.1.11.(3년, (사)청소년내길찾기) - 5차 : 2016.1.12.~2019.1.11.(3년, (사)청소년내길찾기) - 6차 : 2019.1.12.~2022.1.11.(3년, (사)청소년내길찾기) - 7차 : 2022.1.11.~2025.1.11.(3년, (사)청소년내길찾기)

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 동 센터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에4) 따른 위탁 사무이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에5) 의거하여 시장의 사무에도 해당됨.
- 이에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진로교육, 일자리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자립준비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

4)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간기관에의 위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⁶⁾ 따라 제출된 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2024.7)⁷⁾를 보면 ▶조직 및 인력운영 ▶민간 위탁금 관리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사업성과지표 적절성 ▶감사지적사항 등에서 제고 노력이 요구됨(80.07점).
-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⁸⁾ 사업활성화 개선노력에 있어 성과가 목표값을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성과가 반영되지 않고 동일한 지표설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향후 사업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센터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성과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서울시 지도점검과 서울시 회계감사에서 인사위원회 외부인원 과반수 구성, 직원교육 계획 및 직원운영규정 개정, 세출내역증빙 미치 및 민간위탁사업비 통장 내역 확인, 자체수익금 환수관련 임직원 징계조치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책무가 요구되는 바임.
- 센터의 주요 사업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음.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7) ['24. 2. 14. 조직담당관-1682]'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대상을 전체 사무로 확대(5억 이상 → 전체)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 중 '24.8월 ~ '25.7월 종료 사무 중 5억 미만 사무(21개)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함.

8)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2024.7) 5p~8p. 총평 참고.

<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실적 >

(단위 : 명)

구분	지원내용		2022년	2023년	2024.4
사업 성과	성매매예방과 치유	위기청소년발굴	2,370 (950)	1,126 (950)	179 (990)
		성인지상담 치유프로그램	847 (180)	756 (180)	257 (180)
	인문학적 소양과 학습력높이기	학습진행	65 (48)	66 (18)	15 (48)
		검정고시 합격 및 학교진학	25 (10)	17 (10)	2 (10)
	삶의 계획 세우기	진로프로젝트	32 (20)	27 (20)	4 (20)
		개인프로젝트	4 (2)	7 (2)	2 (2)
	사회적기능 회복	인턴십 공방프로그램	2,806 (1,960)	1,973 (1,960)	709 (1,960)
		현장인턴십	177 (115)	111 (115)	18 (115)
	자격증취득과 직무능력 향상	자격증과정운영	4 (4)	4 (5)	2 (4)
		자격증 취득	43 (20)	28 (25)	11 (20)
지도 점검 이행	개선요구사항 건수		10	7	-
	이행완료 건수		10	7	-

※ 실적건수 아래 괄호는 목표값을 의미함.

- 한편 2024년 제5,6차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위탁
심의 결과는 ‘적정’ 이었으나, 시립 일시지원센터와 늘푸른교육센터
의 기능 중복문제와 각 시설간 통합적 연계시스템 구축사항 개선을
권고 받음.

<2024년 제5,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심의결과
시립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재위탁	(사)청소년내길찾기	3년 (’25.1.12.~’28.1.11.)	적정 (권고)
[권고] 의견 - 일시지원센터와 늘푸른교육센터의 기능 중복문제 검토 (아웃리치, 상담 등) - 각 시설 간 통합적 연계시스템 구축					

3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지원 및 일자리 프로그램, 진로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지원을 통해 성매매 유입 방지 및 자활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 그 위탁사무의 내용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다년간의 위탁사무 운영 경험에도 매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이행조치를 실시한 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대한 책무성 강화 노력이 요구됨.

문 의 처

한송희 입법조사관 (02-2180-8146)